

풍수해 관리구역의 설정과 활용 방안

Zoning by Natural Disaster and Practical Application

송주일*, 유재환**, 장문엽***, 김한태****

Juil Song, Jae-hwan Yoo, Moon-yup Jang, Han-tae Kim

요 지

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.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에서 수립하고 있다. 또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, 도시·군기본계획 및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·군, 시·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.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,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,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, 내수, 사면, 바람,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, 개발 상태,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, 풍수해선제관리구역,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.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.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,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.

핵심용어 : 풍수해 관리구역, 풍수해저감종합계획, 도시계획

감 사 의 글

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(자연피해예측 및 저감연구개발사업)의 지원으로 수행한 ‘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’[NEMA-자연-2012-59] 과제의 성과입니다.

* 정회원 · (특)한국방재협회 책임연구원 · E-mail : jisong@kodipa.or.kr
** 정회원 · (특)한국방재협회 선임연구원 · E-mail : jhyoo@kodipa.or.kr
*** 정회원 · (특)한국방재협회 연구원 · E-mail : myjang@kodipa.or.kr
**** 정회원 · (특)한국방재협회 선임연구위원 · E-mail : htkim@kodipa.or.kr